

펠로우(Fellow)운영규정

제 정: 2019.12.16.(이사회 승인)

최근개정: 2023.09.18.(이사회 승인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(이하 '학회'라고 한다) 정관 7조 1항 및 동 시행세칙 4조 1항에 따라 한국철도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을 펠로우로 예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자격) 펠로우 자격으로는 한국철도학술발전에 기여가 크고 학회 발전에 공이 큰 정회원이라야 한다.

제3조 (선정방법)

- ①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 퇴임 시 자동으로 펠로우가 된다.
- ② 선출 펠로우는 회장이 학회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추천하거나,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타 기본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추천하고, 이 사회의 승인으로 선정된다. 선출 펠로우는 매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선출 펠로우는 매년 1회 12월까지 선정하여 차년도 신년교례회에서 공지한다.

제4조 (대우 및 임무)

- ① 펠로우의 경우 춘/추계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의 등록비를 면제한다.
- ② 펠로우가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혹은 철도저널에 해설 및 기타 글을 작성할 경우 저자 옆에 'KSR Fellow'라고 기재한다.
- ③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발전 자문기구로서 펠로우 포럼(Fellow Forum)을 구성한다.
- ④ 펠로우로 선정된 자 중에서 종신회원이 아닌 자는 선정 후 즉시 이내에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
- ⑤ 펠로우는 평의원회에 참여 및 발언할 수 있다. 단, 평의원이 아닌 펠로우는 선거·표결권 및 기타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제5조 (제명) 학회 펠로우로서의 명예를 현저하게 해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이 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.

부칙 (2019.12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8.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09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